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60
----------	-------

발의연월일 : 2026. 4. 28.

발 의 자 : 서명옥 · 김정재 · 박성훈
조은희 · 김기웅 · 서범수
이헌승 · 이종배 · 권영세
고동진 · 배준영 · 김기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19세 미만의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2조의2제3항), 제71조제2호에서는 위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의 제재가 지나치게 약하여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그 불응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교육명령 위반 시의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1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횟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1. <u>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u></p> <p>2. <u>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① <u>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u></p> <p><u><삭 제></u></p> <p><u><삭 제></u></p> <p>② <u>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p> <p>1. <u>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u></p> <p>2. <u>위반행위의 횟수</u></p>